

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생명윤리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3. 12. 5.] [보건복지부령 제982호, 2023. 12. 5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-총괄, 기관생명윤리위원회) 044-202-2619

보건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-인체유래물) 044-202-2617

보건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-유전자,배아) 044-202-2614

제5조(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30.>

1.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
 2.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
 3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
-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“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”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.<신설 2021. 12. 30.>
-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위탁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“협약서”라 한다)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12. 30.>